

- 따라서 생산자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 제조물 사고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움
 - 예를 들어, 2016년 법원이 기습기 살균제 생산자인 세퓨에게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⁶⁾
-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물 인증 표준 제도는 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⁷⁾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및 분쟁조정 중재 서비스만을⁸⁾ 제공함

■ 이에 반해 미국의 39개 주는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⁹⁾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조물 사고에 대해 판매자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
 -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11개 주)
 -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판매자는 생산자와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30개 주)¹⁰⁾
 - 생산자가 주법에 따라 처리될 수 없거나 파산한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9개 주)¹¹⁾

■ 판매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판매자들은 제조물 사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함

- 미국의 판매자들은 생산자가 충분한 손해배상 자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PL보험을 이용해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관리함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생산자와 물품 계약 시 판매자가 생산자에게 높은 수준의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¹²⁾

■ 중국도 미국의 30개 주와 유사하게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

5) 최창희·한성원(2018), 「유통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한 PL리스크 관리 방안」,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참조

6) 조선일보(2016. 11. 16), “소송 이기고도 운 기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조

7) ‘e나라표준인증’ 참조

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참조

9) 이하 2개 이상의 주체로부터 제조물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층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체계’라 지칭함

10)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05), “Selected Product Liability Issues: A 50-state Survey”; CRS Report for Congress에 따르면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컬럼비아 특별구(DC),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11) CRS(2005)에 따르면 콜로라도, 델라웨어,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미주리, 오키오, 테네시, 워싱턴 등이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음. 유사한 조항이 입법교류평의회(ALEC: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의 모델법 ALEC(2018), “PRODUCT LIABILITY ACT”, Section 8.(Liability of product sellers.)에 제안되어 있음

12) 손해보험협회(2018), 「국내 일반보험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보험시장 조사 Phase 2」, p. 76 참조

고 있음

- 중국은 「제조물품질법(產品質量法)」 제4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음¹³⁾
 - 결함제조물로 인해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제품의 결함이 생산자(판매자)의 책임인 경우 손해를 배상한 판매자(생산자)는 생산자(판매자)에게 손해를 구상(求償)할 수 있음

〈표 1〉 일본의 안전인증이 제공하는 공적 보험의 보상 한도

(단위: 억 원)

구분	대인		재산		수리비용	
	인 당	사고 당	사고 당	연간	사고 당	연간 총보상
SG마크	10	-	-	-	-	-
ST마크	10	20	2	-	-	-
SF마크	-	-	10	-	-	-
HAPI마크	10	30	5	10	50	200

주: 사고 당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당 한도에 상관없이 각 청구 건에 대해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1엔=10원)
 자료: 朝見 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 被害救済制度」, 国民生活, pp. 26~29

■ 일본은 공적 안전 인증제도 및 인증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보험으로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함

- 일본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물 사고에 대한 생산자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어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임¹⁴⁾
- 일본은 현재 다양한 안전 인증제도¹⁵⁾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각 담당기관은 〈표 1〉의 보상한도에서 손해를 평가·보상함¹⁶⁾
 - 안전인증 획득이 의무는 아니나 대부분 생산자들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¹⁷⁾
- 따라서 일본의 경우 생산자가 손해배상 자력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인증과 함께 제공되는 공적 보험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13) 중국 「제조물품질법(產品質量法)」 제43조 참조

14) 일본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3조 참조

15) SG마크, ST마크, SF마크, BL마크, HAPI마크 등

16) SG(Safe Good)마크는 유아용품, 노인용품 및 생활 보조 기구, 가구, 주방용품, 스포츠 용품, 자동차 부품, 기타 소형 공산품, ST(Safe Toy)마크는 장난감, SF(Safe Firework)마크는 불꽃놀이 용품, BL(Better Living)마크는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제품, HAPI(Japan Home-health Apparatus Industrial Association)마크는 가정용 건강기기의 안전 인증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임; 朝見 行弘(2012), 「製造物責任にかかわる 被害救済制度」, 国民生活, pp. 26~29 참조

17) ICLG(2016),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n Guide to: Product Liability 2016”, Report, p. 156 참조

〈표 2〉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제조물 사고 보상 체계 비교

국가	손해배상책임 주체	비교
미국(39개 주)	생산자 또는 판매자	1) 제품의 안전성 강화: 생산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제품 안전을 관리해 안전성이 높아짐 2) 소비자 보호 강화: 다층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존재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짐
중국		
일본	생산자 또는 공적보험	
한국	생산자	주요국에 비해 제품 안전 관리 및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존재: 판매자가 생산자를 밝혀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면제받을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산자 이외에 판매자, 혹은 공적보험을 통해 제조물 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표 2〉 참조)
 - 주요국의 경우 생산자와 함께 판매자 또는 공적 인증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의 손해배상 자력 상실로 인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최소화됨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있음
- 국회와 정부는 생산자가 손해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조물 사고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